

2차 토론회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의 의미

# 일본국 상대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승소판결, 그 의미와 향후 대응 방향

2021.01.28(목) 오후 2시~6시  
zoom webinar

| 주최 | 국회의원 정춘숙, 권인숙, 양경숙, 유정주, 이수진(동작을),  
이수진(비례), 이원택, 임오경, 장경태, 최혜영

| 주관 | (재)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 연구회  
일본군‘위안부’ 역사관(나눔의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목차

인사말씀 .....	4
------------	---

## [1부] 사법과 시민권의 관점에서 본 판결의 의미와 과제

이상희(변호사, 소송 대리인단) .....	27
김소라(젠더연구자) .....	31

## [2부] 한일관계의 측면에서 본 판결의 의미와 과제

남기정(서울대 교수) .....	41
양기호(성공회대 교수) .....	50
최봉태(변호사) .....	54

## [3부] 국제사회와 언론의 대응을 통해 본 판결의 의미와 과제

손성숙(샌프란시스코 사회정의교육재단 대표) .....	59
백태웅(하와이대 교수, 변호사) .....	67
신미희(민연련 사무처장) .....	70



국회의원 정춘숙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재)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나눔의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관계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 개최에 뜻을 모아주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양경숙, 유정주, 이수진(동작을), 이수진(비례), 이원택, 임오경, 장경태, 최혜영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실 참가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이번 승소판결의 의미와 향후 대응방향을 함께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8일 한국 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한일 양국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 것 또한 사실

입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성평등의 관점, 시민권의 측면에서 판결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향후 대응을 도모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자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내외에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지난 30여년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투쟁해온 운동의 성과이자, '주권면제론'을 들며 책임을 회피해온 일본 정부에 '반인도적 행위로서 국제강행 규범을 위반한 행위는 국가면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새로운 대항 논거입니다.

일본 정부는 판결 이후로도 여전히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 원칙을 주장하며 소송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맺힌 절규가 들리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본 정부는 하루 빨리 국제적인 반인륜적 범죄에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랍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앞으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향상과 명예회복, 진상규명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21년 1월 28일



국회의원 권인숙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일본국 상대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승소판결, 그 의미와 향후 대응 방향>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토론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시고 공동주최해주신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일본군'위안부'역사관(나눔의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정춘숙 국회여성가족위원장님을 비롯한 양경숙, 유정주, 이원택, 이수진(동작을), 이수진(비례), 임오경, 장경태, 최혜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사 준비에 힘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일본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일본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지난 30여년간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보편적인 인권존중의 원칙에 따라 정의롭게 해결하기 위한 피해자분들의 호소에 응답한 이번 승소 판결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토론회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없음을 아쉽지만,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성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토론회 발제를 이상희 변호사님, 김소라 연구자님, 남기정 교수님, 양기호 교수님, 최봉태 변호사님, 손성숙 대표님, 백태웅 변호사님, 신미희 사무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 행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1. 1. 28.



국회의원 양경숙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양경숙 의원입니다.

작년은 코로나19의 광풍으로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승소 판결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님, 권인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승소 판결은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가, 국가의 주권에 우선한다'는 선언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제법의 중심이 '국가'에서 '인간'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합니다. 주권을 무기로 인권을 짓밟는 흑역사는 청산될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할머니들께서 스스로 이룩하신 업적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1991년 광복절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의 만행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양국의 외면과 무관심 속에서도 할머니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힘 앞에서 약자의 고통이 외면되고 있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아픈 과거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할머니들이 거리에 나선 지 30년, 우리 사법부가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본 정부에 호소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국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한일관계를 재정립할 기회입니다. 일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왜곡된 역사 인식을 거둬야 합니다. 일본군이 저지른 국제범죄를 인정하고 할머니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위안부 문제는 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와 개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고한 개인의 삶을 파괴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정의기억연대,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나눔의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관계자들과 토론회 사회를 맡아주신 아주대 오동석 교수님, 성공회대 강성현 교수님 그리고 이상희 변호사님 이하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할머니들께서는 너무 오랜 시간 힘겹게 싸워오셨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들의 소홀함을 반성하고,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풀어내기 위한 우리의 과제를 찾아갈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 또한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연초부터 할머니들이 승소하셨다는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유정주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정주입니다.

오늘 <제2차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승소 판결, 그 의미와 향후 대응방향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춘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재)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일본군 '위안부'역사관(나눔의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1년 1월 8일, 불의와 비극의 사건을 바로잡을 '최초의 판결'이 우리 사법부에서 내려졌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일본국 '위안부' 제도는 위법하며, 자국 피해자들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억 원씩 배상하도록 판결내렸습니다. 정식 재판에 회부된 지 5년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수많은 국제 인권기구는 1990년대에 이미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전쟁범죄이며, 반인도적인 죄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 처벌에 대한 권고와 결정들을 내려왔던 것에 비하면, 이번 판결이 너무 늦은 건 아니었나란 아쉬움도 여전합니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존중해 정부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적극 노력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처음 민사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던 2013년에는 12명의 생존자가 함께였지만, 지금은 단 5명에 생존자만 남아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숨기길 원합니다. 차마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지닌 이들은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배제되고, 소외된 희생자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사회가 피해자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이 역사적인 판결에 이행방안을 고민할 때입니다.

인간의 존엄성보다 우선시 되는 건 없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국민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판결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저도 국회에서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1.28



국회의원 이수진(동작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이처럼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재)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일본군'위안부'역사관 그리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함께 뜻을 모아주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정춘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안전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먼저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리 피해자들이 승소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23일 재판 결과 '확정'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재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판결 자체를'외면'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끔찍한 폭력의 역사를 반성하고 피해자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과논커녕 경제적 보복을 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함으로써, 자국의 일방적 가해의 역사를 외교적 '갈등'의 문제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로 일본의 가해와 우리 피해자들의 피해가 법리적으로 다시 한번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손해배상금 지급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도 속히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 역할을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양질의 내용을 준비하여 공유해주신 사회자 및 발제자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발제되는 내용을 토대로, 오늘 자리가 보다 다양하고 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아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우리 역사문제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오늘, “일본국 상대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승소판결” 토론회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정춘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과 공동주최를 맡아주신 권인숙, 양경숙, 유정주, 이원택, 이수진(동작을), 임오경, 장경태, 최혜영 의원님, 그리고 주관을 맡아주신 (재)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연구회, 나눔의집, 그리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발제를 해주신 소송 대리인단 이상희 변호사님, 김소라 젠더연구자님, 서울대 남기정 교수님,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님, 최봉태 변호사님, 샌프란시스코 사회정의교육재단 손성숙 대표님, 하와이대 교수 백태웅 변호사님, 민언련 신미희 사무처장님, 사회를 맡아주신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님과 성공회대 열림교양대학 강성현 교수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일본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상상하기 힘든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한 것을 재판부가 처음으로 인정

한 것입니다. 수많은 국제인권기구가 1990년대에 이미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심층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전쟁범죄임을 결론 내리고, 한국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 처벌에 대한 권고와 결정들을 내려왔던 것에 비하면 이번 사법부의 판단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침략국이 민간인을 상대로 자행하는 성폭력은 국제형사재판소가 규정한 전쟁범죄의 대표적 유형 중 하나입니다. 1932년부터 일본국에 의해 운영된 '위안소'는 전시 성폭력 중에서도 그 규모나 체계와 가혹함이 압도적인 수준이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명백히 그러한 전쟁범죄의 희생양이었습니다.

또 다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로써 피해자들의 권리를 직접 구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어떠한 주권이나 외교관계도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평생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되어왔던 희생자들에 대하여, 앞으로도 법원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아닌 인류의 보편적 인권을 기준으로 납득 할 만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이번 1월 8일 내려진 판결이 향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나침반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 역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한일 양측이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해야 하고, 원칙이 퇴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교당국 간 긴밀히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승소판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국회의원 이원택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국회의원 이원택입니다.

지난 1월8일, 서울중앙지법은 일본을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일본의 만행을 알릴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존엄성과 가치를 회복하고, 드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사건은 일본이 한반도를 불법 점령하던 중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국제규범을 위반한 것이어서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사건의 재판권이 있다는 이번 판단은 응당 타당합니다.

일본은 강점기, 국제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를 파괴하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 경우까지도 일본의 주장대로 재판권을 면제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합니다.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국가의 반인도적 중범죄를 금지하는 여러 국제협약을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이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도 맞지 않습니다.

일본은 국제규범을 위반하여 우리 국민에게 입힌 큰 손해를 인정해야 합니다. 국가면제 이론 등 법기술에 골몰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즉각 멈추어야 합니다. 국제규범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0여년 간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다양하게 노력해온 끝에 맺은 결실입니다. 앞으로도 여성인권과 국제평화라는 가치를 위해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임오경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국회의원 임오경입니다.

일본국 상대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승소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뜻깊은 토론회를 공동주최해주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인숙, 양경숙, 유정주, 이원택, 이수진(동작을), 이수진(비례), 장경태, 최혜영 의원님과 주관하신 (재)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나눔의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귀한 걸음 해주신 내·외빈 여러분, 발제 및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1년 1월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원고들에 대한 피고 일

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지난 30여년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싸워온 피해자와 국내·외 시민들이 이루어낸 값진 결과입니다. 수십년간 투쟁해온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피해자들은 전시 상황에서 여성 인권이 어떻게 짓밟혔는지, 그리고 전범국가 일본의 잔인함을 국제사회에 드러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 역시 열두분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해 이루어졌으며 이 분들의 오랜 투쟁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살아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열여섯 분뿐입니다. 고령의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로 우리 정부는 돌아가신 피해자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고 일본 정부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전환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법적 배상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고찰하고, 정책개발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 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19가 극복되어 마스크로 가려졌던 모든 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장경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 국회의원 장경태입니다.

〈제2차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승소 판결 토론회〉를 열어 일본국 상대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승소 판결, 그 의미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1월 8일, 일본 정부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 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사법 정의가 실현된 역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반인도적 문제를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보다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가 우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소송절차에 응하라는 우리 법원의 요구에 무시로 일관해 왔습니다. 판결 후에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과 함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및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손해배상 판결을 집행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정부의 자산을 어렵게 찾는다 해도 압류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주장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응하는 행보를 보일 수 있도록 판결집행에 정부와 국회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협상력과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지 못하는 개인에 불과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로서는 소송 외에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요원하다”는 법원의 안타까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원의 사법적 판단은 갈등 해결의 마지막 수단인 만큼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를 비롯하여 국회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일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실을 규명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을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책임을 되새기며 건설적인 방안이 모색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8



국회의원 최혜영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이지만,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승소판결 이후 [제2차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승소판결 토론회]를 여러 선배 ·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월 8일 대한민국 법원은 처음으로 일본국의 위안부 제도의 위법성과 피해자들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간 수많은 국제인권기구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전쟁범죄임을 규정하고 한국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 처벌에 대한 권고와 결정들을 내려왔던 것에 비하면 늦은 판단이지만, 과거사와 관련해 일본의 국가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국내 법원 판결이라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진실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했

습니다. 그러나 일본 총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일본 외무상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제법 위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법정에서 최소한의 책임도 보이지 않았던 일본 정부가 판결을 평가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피고 일본국의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합니다.

또 다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하는 의무가 우리 정부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피해 사실을 증언하신 할머니들의 용기와 헌신이 명예와 존엄 회복으로 보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위안부 판결의 의미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일본과의 외교적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부]

## 사법과 시민권의 관점에서 본 판결의 의미와 과제

이상희

(변호사, 소송 대리인단)

김소라

(젠더연구자)



## 일본 국에 대한 손해배상판결의 의미

이상희(변호사, 소송 대리인단)

### 1. 소송 경과

#### ▲ 1차 소송

2013년 8월 13일 조정신청(2013머50479)

2018년 1월 28일 보안소송 회부(서울중앙 2016가합505092)

2021년 1월 8일 선고

#### ▲ 2차 소송

2016. 12. 28. 소송제기(서울중앙 2016가합580239)

### 2.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가해국 책임의 원칙

#### ▲ 2015합의에도 불구하고? 또는 2015합의 때문에?

▲ 헌법재판소는 2011년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의 실현은 무자비하기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단지 재산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음.

▲ 2015합의는 한일 양국의 정치적 행위일 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실현으로 볼 수 없음.

2015합의 내용과 합의 전후하여 일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일본정부는 ①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②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음.

-2016. 1. 18. 아제 총리 참의원 예산위원회 발언 : “이번 합의에 따라, 예를 들어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부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

-기시다 외무상 : “성 노예라는 단어는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 “군이나 관헌에 의한 소위 강제연행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정부의 입장”

- 2016. 2. 16.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 “강제동원 증거 없고,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위안부가 성 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

▲ '사죄'와 손해배상책임의 관계

① 피해자들이 30년 넘게 요구한 주장 : 인정, 진상규명,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역사교육,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책임자 처벌.

피해자들의 주장은 2005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의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에서 정한 배상책임의 원칙에 상응.

② 유엔의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도 2019. 7. 12.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A/74/147)에서 공적인 사죄(public apology)는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법으로 잘못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보증하는 것이라고 하였음.

사실의 인정과 법적 책임의 인정, 배상과 교육 등은 모두 동시에 또는 일련의 절차로 진행되어야 함.

③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2015한일합의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소원청구 사건에서, 사죄와 반성을 '피해자의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평가하였음. 사죄의 내용에 피해의 원인이나 국제법 위반에 관한 국가책임, 일본군 관여의 강제성이나 불법성이 명시되지 않고 오히려 일본 정부가 그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면, 사죄의 표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3. 이 사건 판결의 내용

1) 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전쟁 수행의 목적으로 기획, 집행되었다는 것을 천명함.

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통해 일본제국이 달성하려던 목적이 일본군인들의 신체·정서적 안전, 군대의 효율적인 통솔과 통제를 위한 것으로,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기해 법령이 정비되고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판단함. 군대의 보유와 지휘는 국가 행위 중 가장 권력적 행위이므로, 상업적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임.

2)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법성의 근거가 되는 국제조약의 위반과 일본 형법 위반 사실을 인정함

▲ 구체적인 불법행위

- 일본제국이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 침략전쟁 수행과정에서 군인들의 사기 진작, 민원발생 저감, 군인에 대한 효율적 통솔 위하여 위안부 관리 방안 고안하

고, 이를 제도화하여 법령 정비하고, 군과 국가기관에서 조직적으로 계획을 세워 인력을 동원, 확보하여 위안소를 운영함.

- 피해자들은 민간업자 또는 일본제국 공무원들의 기망, 강제 납치, 제로를 이해하지 못한 부모나 사람들의 권유로 '위안부'로 동원

- 위안부로 동원되어 일본제국의 조직적이고 직·간접적인 통제 하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성적 행위의 대상이 됨.

▲ 위법성

①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 부속서 제46조(가족의 명예와 권리를 존중하여야 할 교전당사자 의무), ② 백인노예매매의 억제를 위한 국제조약(성매매 및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납치, 인신매매 금지), ③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금지 조약(미성년 여성을 기망, 납치 금지), ④ 국제연맹의 '노예협약'상 노예해방규정, ⑤ ILO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여성의 강제노동 즉시 폐지), ⑥ 구 형법 제226조 ⑦ 1946. 1. 19. 공표된 극동국제재판소 헌장 제5조©(노예화 등 비인간적인 행위들을 인도에 반한 범죄로 규정) 위반

→ 일본제국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정

3) 법원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기반하여 국가면제 법리를 배척하였음

▲ 법원은 국가면제 이론이 항구적이고 고정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국제인권의 국제법질서를 수용함

“유엔 협약 등 국제협약에서 절대적 국가면제 이론에서 벗어나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한 재판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의 국내법에서 국가면제가 인정되지 않는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이렇나 변천은 국제법 체계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행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콜롬비아 지방법원 Letelier vs. Chile 사건 : 1980년 미국 내에서 칠레 국가정보요원에 의하여 살해당한 Letelier(칠레 경제학자)의 유족이 칠레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법원은, '칠레가 아무리 자신의 주권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더라도 당해 법원이 인류와 정의에 반하여 그러한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을 중요한 논거로 제시함.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피해자에게

사법에 접근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하여 국가면제 이론을 배척함.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도, 독일의 전쟁범죄에 대하여 국가면제 이론을 적용한 ICJ의 2012년 결정에 대하여, 사법적 보호의 절대적 보장이 이탈리아 헌법질서에서 최우선 원칙이고 국내 법률로 편입된 국제법규보다 우선적 효력이 있다는 점, 헌법의 기본이념과 불가침적인 인권의 존중은 국제법에 국내법의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이자 한계로 작용해야 한다는 점, 주권면제이론에 따르면 근원적 인권을 침해하는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주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 구제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이유로, 국가면제 이론의 적용은 위헌이라고 판단함(2014년)

#### 4. 이 사건 판결의 의미

**1)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온전한 시민권을 취득하였음.**

재판청구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안전장치임. 실효적인 권리 보호를 위하여 법관 앞에서 다투어질 수 없다면,

**2) 국가 중심의 국제법 질서에서 인권 중심의 국제질서로 발전,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정표를 찍음.** 특히 지난 20년간 전쟁·분쟁 상황에서 성폭력을 가장 심각한 국제범죄로 다뤘던 국제법적 흐름도 무시할 수 없음.

**3) 공권력이 중대한 인권침해 대한 사죄의 의미를 아시아 공동체가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4) 국가폭력 피해자 구제를 위한 마그나카르타로 평가할 수 있음.**

## 최종적 피해 구제 수단이자 분쟁하 여성 인권을 제고를 위한 계기로

김소라(젠더연구자)

###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및 확정 판결

- 2021년 1월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에게 개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승소 판결. 일본 정부가 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월 23일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
- 한편 1월 13일로 예정되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 사건 선고는 연기되었고, 3월 24일 심리를 재개하기로 함.
- 이 가운데 1월 8일 판결을 일본 정부의 법적 배상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최종적 피해 구제 수단으로서 역할을 다한 법적 판결이자, 일본군 성노예제를 국가의 주권면제 제한 사유로 인정함으로써 국제법에서 분쟁하 여성인권 제고의 계기를 만든 판결로 해석할 필요 있음.

### 2. ‘최종적 수단’이라는 말이 보여주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역사

- 1980~90년대 한국사회의 여성운동 성장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가 생겨난 가운데 많은 피해자, 활동가, 연구자들이 ‘위안부’ 문제에 관해 말해왔음.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고, 활동가들이 이들과 함께 ‘위안부’ 문제를 국내 뿐 아니라 UN, ILO와 같은 국제기구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며, 연구자들이 증언을 채록하고 자료를 발굴·해석하며 이 문제를 기억하고 해결하기 위해 힘썼음.

- 일본과 한국에서 제기한 소송도 그 같은 활동의 하나임. 1991년 12월 6일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가 군인·군속 강제동원 피해자와 김학순을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 등 35명과 함께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전후 전쟁과 식민지 배로 인한 피해를 사과하고 보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했음. 하지만 1998년 4월 일본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기 지부가 일본군 '위안부' 3명에게 90만엔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단을 내린 판결(일명 관부재판) 외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은 번번히 좌절되었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관부재판도 2001년 도쿄고등법원,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됨. 일본의 법원은 가해자 처벌과 배상을 요구하는 '위안부' 피해자의 고소장을 수리조차 하지 않거나, 제척기간 경과, 개인의 청구권 소멸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요구를 거부해왔음. 일본 법정에서 이루어진 재판과 그 결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법정에서 피해 구제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움을 보여줌.
- 일본이 가해국으로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사법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아 일본의 식민지배와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의 사법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로막혀 있어 한국에서의 재판이 최종적인 피해 구제 수단으로 이해되는 것. 재판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청구권협정과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또한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괄하지 못”하였으며 “협상력,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지 못한 개인에 불과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소송 외에 구체적인 손해를 배상받은 방법이 요원하다”고 이 같은 이유.
- 하지만 이는 한국 법원의 판단 외에는 다른 어떤 대안도 남아있지 않은 부정적인 상황으로만 읽히기보다, 지난 30여년간 일본 정부에 젠더에 기반한 전쟁범죄이자 성폭력인 일본군 '위안부' 제도 운영의 책임을 묻고 피해 구제를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져왔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읽힐 필요 있음. 그간 피해자, 활동가, 연구자들은 국내외 시민사회와 국제인권기구에, 한일 양국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수요시위와 추모비 및 역사관 건립, 다양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분쟁하 젠더폭력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기억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이 같은 노력 속에 영화, 드라마, 소설과 같은 대중적인 콘텐츠들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기리려는 실천들 역시 나타났고, 이는 피해자의 삶에 대한 공감과 상상의 가능성을 넓히며 대중적인 지원을 받기도 함. 이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일본 정부의 사과 및 배상과 함께 전쟁이 파괴하는 것이 여성의 삶이라는 역사적 기억을 잊지 않고 계승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은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이번 판결에 최종적 피해 구제 수단이라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1월 8일 판결을 이끌어낸 사회적 힘으로 이해되어야 함.

### 3. 전시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제적 접근의 변화

-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발전한 분쟁하 여성폭력에 관한 논의와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음. 1990년대 이전까지 전시성폭력을 비롯하여 분쟁하에서 젠더를 기반으로 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중대한 전쟁범죄로 인지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음. 일례로 이미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뿐만 아니라 일본군 점령지의 민간인과 연합군 등 다양한 이들이 ‘위안부’의 존재를 보고 들었음. 하지만 당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심각한 전쟁범죄이자 인권유린이라는 인식은 희박했음. 2차 세계대전 후 전쟁범죄에 대한 처리와 처벌을 목적으로 한 뉘른베르크 전범재판과 극동국제군사재판이 열렸으나, 식민지였거나 직접적인 전쟁피해를 입었던 피해국 다수가 재판 과정에서 소외되었고, 극동국제군사재판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미국 등 연합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본의 가해 책임을 철저히 묻지 않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음.
- 분쟁 하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된 것은 구유고슬로바니아와 르완다에서 발생한 전시성폭력,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부터임. 1993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유엔 세계인권대회에서는 비엔나 선언 및 행동강력을 채택했는데, 이때 채택된 행동강령에서는 분쟁 하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는 국제인권법의 원칙을 침해한 것으로 여기에는 살인, 조직적 강간, 성노예, 강제 임신 등이 포함된다고 천명. 또한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 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한 행동강령에서도 분쟁 하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범죄이며 이에 대한 조사, 범죄자의 기소와 처벌,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함을 선언함. 이와 함께 유엔 인권소위원회와 인권위원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시 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wartime)으로 규정한 가운데,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제출이 이어짐. 이러한 노력 속에 전시성폭력은 상대의 사기를 꺾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으로 이해되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됨.

- 분쟁하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불처벌(impunity)됨에 따라 여성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지속된다고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짐. 1993년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1994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1998년 상설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은 이러한 노력의 산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이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었으며, 불처벌 상황을 종식하고 반인도적 전쟁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기소 책임을 국가가 져야함을 강조한 2000년 '여성과 평화 안보'에 대한 결의(1325호)를 비롯하여 20여년간 분쟁하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결의들이 이어졌음. 이는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의 예방과 관리, 해결을 위한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키며, 분쟁하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국제기구의 평화 구축 사업을 통해 피해의 구제와 회복을 지원할 것을 목표로 함.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과 전시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변화한 접근은 한국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맥락이라 할 수 있음.

#### 4.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판결의 의미

- 판결은 분쟁하 여성에 대한 폭력 등 젠더 기반 폭력은 반인도적 범죄로 강행규범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같은 행위에 대해 '타국의 주권 행위는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론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님. 특히 판결문에서는 위안소의 설립과 운영, '위안부'의 동원 등을 일본의 주권행위로 이해함으로써 '위안부' 제도의 구상과 설립, 운영에 있어 일본 정부가 광범위하게 개입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 비록 주권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강행규범을 위반했을 때에는 국가면제의 제한 사유이며 가해국인 일본이 책임져야 하는 불법행위임을 선언하였음.
-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전시성폭력을 비롯하여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 젠더폭력을 국가면제의 제한 사유로 다룬 적 없다는 점에서도 판결은 큰 의미를 지님.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본질은 일본이 체계적으로 관여하여 운영한 성노예제이

며,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 국가면제를 보장함으로써 중대한 인권침해를 범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국가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확인한 것. 국가면제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그에 대한 해석 속에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수정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이는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이해될 수 있음. 면제를 둘러싼 이탈리아와 독일 간 다툼, 일명 페리니 사건이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를 보여주는 것으로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되었으나, 이는 강제노동에 관한 것으로 이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과는 다름. 또한 페리니 사건 당시 독일은 전후 보상에 관한 여러 노력을 진행 중이었다는 점에서도 이번 사건과 다름. 따라서 이번 법원의 판결은 분쟁하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중대한 반인도주의적 전쟁범죄로서 국가면제의 제한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앞으로 전시성폭력 등 분쟁하 폭력 피해를 구제하고 여성인권을 제고하기 위한 판례를 쌓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

- 판결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경험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 그리고 보편적인 정의와 인권을 침해한 전시성폭력을 기존 국제규범이 가진 한계를 넘어 새로운 원칙과 정의를 만드는 기준으로 삼음. 이는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하며, 이 같은 원칙을 현실에서 실행하기 위해 여성 시민에 대한 성적 침해에 있어 피해자가 재판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구제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의(justice)를 이야기하는 것. 통상적으로 시민권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법적 지위를 이야기하지만 국적으로만 이해될 수는 없으며, 공동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원칙이 됨으로써 그 의미가 확장됨. 이번 판결을 통해 여성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평화 구축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연결된다는 점 역시 지적할 수 있을 것.
- 또한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강제동원이 1965년 한일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고 판단한 2018년 대법원 판결 위에 이루어짐으로써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례를 쌓아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식민주의를 경험한 국가의 피해자들, 특히 성적 침해를 입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전통적 국제논리인 주권국가와 국가면제 논리에 우선하며, 향후 국제규범이 젠더 시각과 포스트식민주의 관점을 통해 그 의미를 확장해야 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 최근 점차 반인도적 행위 등으로 인해 중대한 인권침해를 입은 개인에게 사법적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적절히 구제하고자 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음.

일례로 앞서 언급한 페리니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2012년 독일의 국가면제가 인정된다고 결정했으나, 이때 그 같은 판결이 반인도주의적 행위를 저지른 국가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소수 의견이 나오기도 함. 또한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역시 2014년 국가면제를 이유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부인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모든 이의 재판받을 권리를 명시한 이탈리아 헌법과 충돌한다며 위헌이라고 선언함.

- 이번 판결은 전쟁으로 인해 중대한 인권침해를 경험한 피해자들의 사법접근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이들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길을 찾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 젠더에 기반한 전쟁범죄이자 성폭력인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인격을 침해하며 심대하고도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했음. 그리고 여전히 성노예제, 강간, 강제 성매매, 강제 임신을 비롯한 다양한 전시성폭력이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음. 판결을 발판으로 삼아 전시성폭력 피해자들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과정과 절차를 갖추어줌으로써 피해자들이 침해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또한 이와 함께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국제규범을 평가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와 각국에 여성에 대한 폭력을 불처벌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가해자를 처벌토록 효과적으로 강제할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 마지막으로 판결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만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일본 정부가 다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 5. 사법적 판결을 넘어 사회적 기억이자 새로운 계기로

- 판결은 국가면제, 국제법의 인권 논의 추세 등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한일 양국 간의 문제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정하지 않음. 또한 원고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으나 금전적 배상으로 문제의 해결을 한정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판결의 실효성은 다각적으로 찾아져야 함. 한국 정부는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해법을, 법원은 절차에 따른 판결의 집행 방법을, 시민들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억을 계승하며 전시성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을 지속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특히 한국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2015년 12월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하기보다 1965년 한일합의와 청구권 협정, 2015년 '위안부' 합의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실효적 있는 구제를 위한 외교적, 정치적 방안을 찾아야 할 것.

- 또한 피해의 구제는 사법적 접근권과 재판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진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야 함. 이를 위해 연구자와 사회의 역할이 요. ‘위안부’ 제도가 탄생하고 운용될 수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일본군과 ‘위안부’ 피해자라는 2자적 관계를 넘어, 일본군의 위안소 운영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집중되었던 시야를 공창제와 식민지 조선의 하층 계급 여성의 삶 등 전쟁 당시의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고 당시의 시간적 맥락과 사회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 그리고 이 같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분쟁하 여성인권 문제로 현재화하기 위해 역사 교육을 통한 이 문제의 기억과 계승이 이루어져야 함. 이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본의 외면 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에도 전세계 각지에서 계속되는 우리의 문제임을 인식할 수 있을 것.
-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그것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의 의미는 식민주의, 여성 인권, 평화가 갖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민감성을 높이는 것으로, 그 목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우리는 이번 판결을 과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질문함으로써 미래를 도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



# [2부]

## 한일관계의 측면에서 본 판결의 의미와 과제

남기정

(서울대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최봉태

(변호사)



## 위안부 판결 이후 위안부 문제: ‘위안부 합의’의 전유(專有, appropriation)를 위하여

남기정(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 진실한 사죄에 대하여

「そうか、迷惑かけたか。(中略)先生、謝ります。どうもごめんなさい。(頭を下げ詫  
びる) 日本は法治国家だからね、ごめんなさいで済むんだったら警察はいらないんだ  
から。何か悪いことをしたら、何らかの形で償わなければならない。だから今からそ  
れをやる。」(坂本金八「3年B組、金八先生」(第一話), 1979)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중략) 선생님이 사과할게요. 정말 미안합니다. (머리  
를 숙인다) 일본은 법치국가니까, 미안하다는 말로 일이 끝나면 경찰은 있을 필요  
가 없지. 무언가 잘못된 게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보상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  
까 지금부터 그걸 할게.”(사카모토 긴파치, 「3학년 B반, 긴파치 선생님」, 제1화,  
1979)

1980년대 이래, 일본에서 국민적 인기를 얻은 학원 드라마, 「3학년 B반 긴파치 선  
생님」 제1화(시리즈1)의 한 장면에서 진실한 사죄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것은, ‘사  
실의 진솔한 인정, 반성과 사죄의 직접적인 표현, 원상복구를 위한 법적 구제의 약  
속, 즉각적인 행동’ 등으로 구성된다.

### ‘2015년 합의’의 전취와 전유

2000년 법정 운동은 이후 2011년 8월,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정부의 부작위가 위헌  
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이끌어 냈고,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정부의 대일 협상

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가 2015년 합의였다는 점에서 운동은 그 한계를 지적하고 극복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2015년 합의 이후 운동이 더 커진 측면은 있지만, 시간의 흐름은 운동 측보다는 반동 측에 유리한 구도가 전개되고 있다. 그 파기나 재협상도 오히려 반동에게 기회를 줄 수 있으며, 기 이후의 운동에 확실한 전망도 서 있지 않는다는 점을 '정직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2015년 합의를 전취(戰取)하여 전유(專有, appropriation)하는 것이 선택지의 하나로 존재할 수 있다. 이는 2015년 합의를 공학적으로 해부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출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015년 합의를 공학적으로 분해하고, 그 내용과 구조를 다시 이해해 보고자 한다.<sup>1)</sup> 먼저 2015년 합의의 이행에서 한국의 이행은 일본의 이행이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내각총리대신의 사죄와 반성 표명은 일본군 관여 사실을 인정한 위에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한 데 따른 것이며, 일본 정부의 금전적 조치는 이를 확인하는 행동이다. 그럼에도 합의 직후, 이를 부인하는 일본 정부의 행동이 합의 정신에 위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2015년 합의'가 '사문화'되고 있는 일차적 원인이다.

## 국제법 위반론에 대해

나아가 일본이 한국에 전가보도처럼 사용하는 '국제법 위반'론도 국제사회에 나가면 하나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한국 대법원이 자국 헌법에 근거해서 한일 청구권협정에 위반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제법 위반 상태를 만들었다는 일본 측 논리는 일본 학계에서조차 통용되기 어려운 주장이다. 개인청구권을 국가가 소멸시킬 수 없다는 인권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 일본 정부의 행동을 비판하는 일본의 이른바 양심적 법조인들은 차치하고도, 조약과 헌법에 관한 일본 학계의 일반적인 인식에서 볼 때 일본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세계의 어느 국제법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국제법 교과서들도 조약과 국내법, 조약과 헌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약의 우위를 인정하면서도 양자 사이의 이원론, 국내법 우위의 일원론 등이 함께 경합하고 있다고 하여 여러 학설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학계에서는 헌법학자들을 중심으로 헌법의 우위를 주장하는 학설이 강력히 존재하고 있다. 이는 전후 협법의 평화주의와도 무관하지 않다. 헌법에 대해 조약우위설을 인정할 경우, 법률보다 간단한 절차로 성립하는 조약에 의해 헌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생겨, 이는 국민주권과 경성헌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 그 근거다.

1) 이하, 지난 11월 14일, 정대협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12월 5일, 2000년 여성국제법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을 편집한 것임.

일본 사법부가 헌법의 우위를 인정하고 조약을 해석한 사례로 스나가와 소송이 있다. 1957년, 도쿄 스나가와 기지 반대 운동 과정에서 기지에 난입한 시위대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한 사건이다. 하급심에서는 미일안보조약에 의한 미군주둔이 헌법 정신에 반하며 미일행정협정에 의거한 형사특별법도 헌법에 위반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시위대의 피고들이 무죄라는 판단이었다. 그런데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단은, 이를 뒤집어 피고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그 논리는 미일안보조약이 위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피고의 유무죄가 아니라 그 판단의 근거로 동원된 논리다. 즉 헌법우위론에 입각해서 미일안보조약이 이에 위배되는가 아닌가가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국제법 위반'론의 시비를 판단할 참고 사례로 고카료(光華寮) 사건이 있다. 고카료란 제2차세계대전 말기 교토대학이 민간소유자로부터 임차해서 중국인 유학생 기숙사로 사용하던 부동산이다. 여기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지지하던 중국인 학생들이 점거를 시작하자, 중화민국 정부가 이들 학생들의 퇴거를 요구하며 일으킨 소송이다. 그러다가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로 일본이 중화민국에 대신해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로 인정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고카료의 소유권 이전 문제와 더불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외교관계가 단절된 중화민국이 일본의 법정에서 소송당사자 능력을 갖는지 여부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본 사법부는 소송 과정에서 중화민국이 '타이완'으로서 일본 법정에서 소송당사자 능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즉 조약과 국내법 사이에서 일본 사법부는 부분적으로 국내법 우위의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 일본 사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합법정부로 승인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중화민국에 일정한 실체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입각해 '정치는 사법에 개입할 수 없다'고 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측에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 사법부가 국내법에 대한 조약의 무조건적인 우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 정부도 이를 존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법은 이러한 여지를 허용하고 있다. 국제법은 국내법에 대해 일방적으로 우위를 주장해서 국내법을 부정하는 법체계가 아닌 것이다. 그 때문에 정부간 조정이 필요한 것이며, 한일 양국 정부의 역할이 여기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일본에 대화를 요구하며 조정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 ‘2015년 합의’의 법적 지위

‘2015년 합의’는 현재 어떠한 지위에 있는가. 2015년 합의 검증 TF 보고서는 일본 정부의 책임인정, 내각총리대신의 사죄와 반성 표현, 예산조치의 실시 등 ‘3대 핵심사항’에서 진전이 있으나, 소녀상 문제, 국제사회에서의 비난 비판 자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등 세 가지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 해결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발표하는 가운데 검증 TF 위원장은 향후 파기 무효화, 합의 유지, 제3의 방안의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 가운데, ‘이성의 비판에도, 의지의 낙관을 믿으며’, “문제가 있고 치열한 해결 노력이 있으면 적절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하여 제3의 방안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대통령도 입장 표명(12.28.)을 통해 2015년 합의가 절차적 내용적 흠결이 확인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되었으며,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로서,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정부에는 피해자 중심해결과 국민이 함께 하는 외교 원칙 하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외교부는 후속조치를 발표(2018. 1.9.)하고, “피해자 중심주의 조치를 모색하고, 10억 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며, 기금 처리 방안에 대해 일본 정부와 협의할 것, 재단 운영에 대해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단체 국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후속 조치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를 발표하면서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위안부 문제와 같이 전시 여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문제 해결에 있어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란 다른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의 우려와 의견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제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의미 있는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기자간담회(2018.1.16.)를 통해, “국가간 정부간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서, 약속 파기나 재협상 추가 요구는 없다”면서, 문제 해결에서 확인되어야 할 세 가지 기준으로 “역사적 진실, 보편적 정의, 피해자 입장” 등을 제시했다.

2019년 12월 27일에는 헌법재판소가, 2015년 합의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해당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며, 이에 대한 평가가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도 참고할 사항이다.

이상에서 확인되는 것은, 2015년 위안부 합의가 ‘국가간 정부간 합의’로 존재하며,

‘파기나 재협상의 추가 요구’는 하지 않으나, ‘역사적 진실, 보편적 정의, 피해자 입장’에서 문제 해결에 이르지 못하여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국제사회의 인식도, 이 합의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 접근의 원칙이 확인되도록 개정(revise)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2)</sup>

합의로서 존재하지만, 미완의 해결이라는 것은 이 합의가 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원칙을 확인하는 로드맵에 대한 합의라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는, 비록 그 안에 구체적 해법이 제시되어 있다고 해도, 그 법적 효력에 한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외교에서 유사한 사례가 미일관계에서 존재한다.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에 대한 미일안보조약 제5조 적용의 문제가 가장 유사한 사례다. 이에 대해서는 오바마 행정부 시기부터 클린턴 국무장관(2011년 1월), 오바마 대통령(2014년 4월), 트럼프 행정부 시기 틸러슨 국무장관(2017년 2월), 매티스 국방장관(2017년 2월 및 10월), 트럼프 대통령(2017년 2월)이 언급해 왔으며, 기자회견 자리에서 표명되어 왔다. 이를 일본에서는 미국의 ‘방위 의무’의 공언으로 해석해 오고 있으나, 그 법적 효력의 한계로 인해, 미국의 행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그 의지를 ‘구두’로 확인하는 절차를 중시하고 있다. 최근 바이든 당선인과 스가 총리와의 첫 전화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구두’로 확인하는 장면이 있었다. 여기에서 합의는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는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합의를 존재하게 하기 위해 ‘구두 약속’의 반복이 필요한 것이다. 즉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문서로서 그 효력이 확인될 것을 전망한 ‘구두합의’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거부하는 일본의 행동은 그 법적 효력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후텐마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미일 합의, ‘북방영토’ 등의 해법을 포함한 1956년 러일공동선언 등이 그 사례이다.

### ‘2015년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합의의 일본 발표 내용 가운데 중심은, 한국이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이 10억엔을 거출하고, 일본과 한국 양국이 협력하여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상처 치유의 사

2)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733876.html](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733876.html) ; [https://tbinternet.ohchr.org/Treaties/CEDAW/Shared%20Documents/JPN/CEDAW\\_C\\_JPN\\_CO\\_7-8\\_21666\\_E.pdf](https://tbinternet.ohchr.org/Treaties/CEDAW/Shared%20Documents/JPN/CEDAW_C_JPN_CO_7-8_21666_E.pdf)

업을 행하기로 한 것이다. 즉 10억엔 거출과 전달로 일본의 책임 이행이 완료된 것이 아닌 것이다. 즉 2015년 합의는 프로세스에 대한 합의로,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공유하고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 그 내용이다. 합의 내용에 입각해 일본 정부의 성실한 협조가 필요한 것이 '사문화'된 합의의 '소생'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즉 일본 정부의 이행 의무가 10억 엔을 거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상처 치유 사업의 실시에 있다는 점이 합의 당사자인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서 분명히 공유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10억엔을 정부예산으로 충당하고 그 사용을 위해 일본과 협의하겠다는 것은 재협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0억엔의 의미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예산 조치가 일본 정부의 가해 사실 및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일 때, 피해자들은 이를 수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요청하는 '행동'은 '진실 인정, 진심을 다한 사죄, 재발 방지 노력'이다. 그런데 이는 '추가조치'가 아니라 '필요조치'로서, 합의의 외부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다.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과 관련해서는 해당 문장의 시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65년 협정이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解決されたこととなることを確認する]과 되어 있는 것과 대비해, 2015합의는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解決されることを確認する]고 되어 있다. 이는 2015합의가 프로세스에 대한 합의였음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2015합의는 로드맵의 의미를 지닌다. 즉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언젠가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실시할 조치란,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이며, 구체적으로는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한'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10억엔의 전달 만으로 일본이 약속을 이행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해결될'의 주어가 '이 문제'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기시다 외상이 밝힌 제1항에서 언급한 '위안부 문제'이며, 이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다. 따라서 '이 문제'에는 소녀상의 문제와 국제사회에서의 비난 비판 자제의 문제가 포함되지 않으며, 이 두 문제는 2015합의에서 해결되어야 할 '이 문제'의 외부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1밀리미터도 옮길 수 없다'는 것은 합의에 대한 몰이해(또

는 자의적 해석)에 더해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몰이해가 확인되는 말이며, 이것이 만일 일본이 취해야 할 ‘필요조치’에 대한 거부라고 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합의 위반이다. 반면, 한국 정부에 대해서만 합의 실시를 요구하는 것 또한 합의에 대한 자의적 해석(또는 과잉해석)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참고할 것은, 2018년 1월 9일, 고노 외상은 한국 정부에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추가 조치’ 수용 거부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일본의 합의 이행은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도 이행할 것이며, 한국 측에게도 이행을 요구하겠다”고 대답한 바 있다는 사실이다. ‘추가 조치’가 아닌, ‘필요 조치’는 진행중이며, 앞으로도 일본 정부가 할 일이 남아있다는 점을 인정할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일본이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합의는 최종적으로 사문화될 것이며, 그 책임은 일본에 있다. 무엇보다도, 합의에서 확인된 일본의 가해 사실 인정과 진정어린 사과, 그리고 법적 책임의 완수 만이 사문화된 합의를 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따라서 ‘공은 일본에 있다’.

일본의 책임있는 사람(스가 총리, 또는 도미타 대사)이 위안부 기림비를 방문하여, 고노담화에서 확인한 바의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2015년 합의에 입각해 일본 총리 대신의 사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베 내각에 이어, 2015년 합의를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계승한다는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 즉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사과한다는 문구를 스가 총리의 욕성으로 확인해야 한다. 2015년 합의는 아베 내각총리대신이 주어로 되어 있어, 개인의 입장 표명에 불과하다. 즉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이라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현한 주체는 아베 총리인 바, 그가 사인으로서 이를 표명한 데 불과한 것인지, 공인의 입장에서 사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주어에 이어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라는 자격이 제시되어 있다고 해도 이는 명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본 국내에서의 해석과 판단도 이 표현에는 여전히 애매함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총리들이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거나 다마구시료 등을 봉납할 때, ‘내각총리대신’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 그 공인으로서의 자격에 대해 분명한 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식적으로는, 중의원에 제출된 질문주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사인’으로서의 ‘공식 참배’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sup>3)</sup> 그렇다면, 2015년 합의는 우리 측이 그 공인으로서의 자격을 확인

3)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shitsumon.nsf/html/shitsumon/a188008.h](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shitsumon.nsf/html/shitsumon/a188008.h)

하기 전까지는 아베는 사인으로서의 의견을 표명한 데 머물러 있는 것이 된다. 2015년 합의가 한일 정부간의 합의로서 법적 효력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명확히 해결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2015년 합의에서 확인한 10억엔은, 고노담화에서 일본 정부가 인정한 대로 일본군에 의한 전시 여성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일본 정부가 책임을 지고 사과하는 마음의 징표로서 일본의 예산 조치로 거출'하여 전달하는 '사죄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10억엔이 합의에서 확인한 대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상처치유를 위해 사용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여기에서 피해자 없는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이 구현되어야 한다. 10억엔의 잔여금과 성평등기금으로 '여성인권평화재단(가칭)' 설립 요구를 반영하여, '진상규명과 연구교육, 기억계승'을 위한 시설을 라키비움의 형태로 설립하여, 국제사회와 미래로 열린 해결의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상의 일본 측 노력을 전제로, 2015년 합의가 보완되어 그 한계가 극복되었음이 확인될 때, '평화의 소녀상'은 위에 언급한 라키비움 형태의 시설/기구로 이전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의 진정어린 사죄와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수요집회의 상징이었다는 점이 계승된다. 이후 수요집회는 위의 시설/기구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수요행사(이용수 학교, 세미나, 간담회, 증언 낭독회 등)로 전환되어 실시될 수 있다.

이 시설/기구는 일본의 연구자, 활동가를 포함해서 국제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재단을 국제사회에 '전시 성폭력'의 '기억계승'과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제공하여, 전시 성폭력과 관련한 아시아의 여성 관련 국제레짐을 주도하는 기구로 발전시킨다.

## 현실의 입체적 구성

현실 인식의 방법이 해법 모색의 방향을 설정한다. 현실의 입체적 구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실은 높이와 너비와 깊이를 가지는 입체적 공간 안에 존재한다. '위안부 문제'는 역사, 정치, 법이라는 세 개의 벡터를 가지는 공간 속에서 '피해자 중심의 접근'의 원칙에 부합하는 최적해를 구하는 가운데 해결될 수 있다. 그 고민을 평면 위에 입체를 옮겨 놓은 입체주의자들의 시도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

[tm ;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shitsumon.nsf/html/shitsumon/b188008.htm](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shitsumon.nsf/html/shitsumon/b188008.htm)



“이[입체주의]는 르네상스 시대 이후 서구 미술가를 사로잡은 방식을 따라 3차원 공간의 환영 안에서 대상들을 사실주의적으로 보여주는 대신, 만약 어떤 물체를 동시에 두 면 이상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를 보여주었다. (중략) [아비뇽의 아가씨들에서] 이 인물은 복합 관점으로 그려져 신체를 한 지점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도 인물들은 여전히 꽤 잘 알아볼 수 있다.”(데브라 J 드위트 외 [조주연 외 옮김], 게이트웨이 미술사, 이봄, 2017, 424-425)

## 2021.01. 위안부 손해배상 승소판결과 한일 관계 전망

### 양기호(성공회대 교수)

- 올해 1월 8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승소 판결이 나왔음. 재판부는 “원고들이 일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국내 법원이 외국 법원인 피고에게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주권면제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이 사건은 피고 일본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행위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음.
-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1)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 2)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함. 3) 또한, 동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하였음.
- 이에 대해 일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사법부 판결은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함. 일본 정부는 이 재판에 대해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이 적용돼 사건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음. 가토 관방장관은 국내 사법부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논평했음.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으며,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을 양국이 확인했다고 주장함.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이 남관표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강하게 항의했음.
-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심 판결 확정을 환영하였음. 일본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이 선고됐다면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 원칙을 앞장서 확인한 선구적인 판결”이라고 높이 평가함. “국내 법원은 물론이고 전 세계 각국의 법원들이 본받을 수 있는 인권 보호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으며,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발표함.

- 기존 한국정부의 입장은 이번 사법부 판결이후 분명한 입장이 드러나고 있지 않음. 2017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 오히려 역사문제를 제대로 매듭지을 때 양국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음.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의 역사문제 해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다며,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음. 한일관계의 걸림돌은 과거사 그 자체가 아니라 역사문제를 대하는 일본정부의 인식에 부침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음.
- 2018년 1월 9일 강경화 장관은 위안부합의 재검증 태스크포스 보고서가 나온 뒤에, 다음과 같이 처리 방안을 제시하였음. 첫째,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 둘째, 이 과정에서 피해자, 관련단체,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피해자 중심의 조치들을 모색해 나가겠음. 셋째,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음. 넷째,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음. 이를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임.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함.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같이 바라시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임. 다섯째, 정부는 진실과 원칙에 입각하여 역사 문제를 다루어 나가겠음.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
- 문재인 정부는 3.1절 기념사나 8.15 경축사에서 분명한 대일 원칙론 입장 천명, 국회에서 8월 14일 위안부 기림일 제정, 이용수 할머니 청와대 초청 등, 위

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와 존엄 회복에 있어서 나름대로 노력해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사법부 판결이후 아직 분명한 입장이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1월 8일 외교부 발표나 1월 18일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알 수 있음.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기자회견에서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가 공식합의를 인정하나 일본정부나 기업 자산 현금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1월 8일 사법부 판결은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함.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1월 22일 국무부 대변인 발표를 통하여 북한핵과 미사일은 심각한 위협이며, 한일 등 동맹국과 연계하면서 대북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함.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력 강화를 내걸고 있음. 강제징용과 위안부 판결 등 한국 사법부 결론은 한일간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정부는 동맹관리 차원에서 양자간 원만한 해결을 요청할 것으로 보여짐. 오바마 전 정권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환영하며 지소미아 체결을 지지한 경위가 있어서 한일 양국은 미국의 입장을 주목하고 있음. 일본 정부·여당 내에서는 한국이 미국을 의식해 양보할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으나, 낙관을 경계하는 견해도 뿌리 깊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하였음.
- 임기말에 접어들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경색 국면에 빠진 남북대화, 북미관계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문재인 정부는 대일정책에서 도쿄올림픽 성공 지원, 북일관계 재개,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올림픽에 주안점을 두고 한일, 북일, 남북간 대화와 소통이라는 선순환 구도를 추진해 왔음. 한일 각각 국가안보실(NSC) 수장인 서훈 실장과 기타무라 시게루 국장간 빈번한 전화 회담을 유지해 왔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일본을 방문하여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을 만나 해법을 모색하였음. 최근까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차관간 대화도 이어져 왔음. 일본통인 강창일 전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주일대사로 임명하였음.
- 그러나, 국내 사법부 판결 이후 더 이상 역사쟁점을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피해자 개별 소송에 대응하는 해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해진 상태임. 한일 양국간 기본조약인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은 국내 사법부 체계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무효화된 상태임.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의 기조인 한국의 역사영토 vs 사회문화라는 대일 원칙주의와 미래지향적 관계의 구축을 담은 투트랙 접근(Two Track Approach)도 사실상 불가능해짐. 한일 청구권협정

을 기초로 한 한일관계와 국내 사법부판결간 대립적인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한국외교의 대일 전략은 커다란 난관에 부딪친 상황으로 판단됨.

- 최근 마이니치신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상반기중 스가 정권과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음. 대북정책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한일관계 관리에 노력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에서 대일 유화 메시지를 내고 있으나, 일본정부와 언론의 반응은 매우 냉담한 상태임. 상반기중에 강제징용 일본기업에 대한 매각 명령이 나오고, 2차 위안부 소송에서 승소가 나오면 일본정부가 더욱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일본군과 일본군속 피해자나 유족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음. 일단, 외교부가 2015.12 합의를 바탕으로 외교협상이 불가피하며, 사전에 피해자 단체간 의견교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궁극적으로 일본의 사죄와 보상, 한국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본 전제로, 한국정부와 국내 피해자와 원고단, 한일 양국 정부와 국회간 대화와 소통이 요구되고 있음.

## 2021.1.8.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판결에 대해

### 최봉태(변호사)

지난 2021.1.8. 서울중앙지법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권면제론을 배척하며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내렸다.

위 재판은 2013.8.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민사조정신청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다. 조정이란 판결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위 조정절차에서 피해자들은 단순한 배상이 아니라 사죄가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므로 위자료 금액도 상징적인 금원만 청구를 하고, 진정한 사과를 대화를 통해 받으려 시작한 것이다.

일본국을 상대로 한 이번 손해배상 조정은 그 이전에 한국의 원폭피해자들이 미국 정부와 미국 군수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한 것에 용기를 내어 이루어진 것이다. 일부 일본 언론에서는 마치 일본국을 상대로 한 이번 판결이 일본에 대한 반일적 판결이라고 민족주의적 감정을 조장하기도 하나 그 경위를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한국사회 민주화 이후 국가폭력에 대한 청산과정을 통해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노력을 하여 왔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보편적 인권구제를 위해 제소된 것이며 이번 판결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번 서울중앙지법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우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중대한 인권침해의 경우에는 주권면제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이른 바 인권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면 국가권력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인권구제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국 이외에서 주권면제이론을 통해 그 구제를 거부된다면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길은 사실상 차단이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판결은 한국내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에 대해 사법을 통한 정의 회복의 길을 열었

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이번 판결은 이른 바 93년 고노 담화의 사실인정을 한 단계 발전시켜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라고 판단하였고, 그것이 국제강행규범을 위반하였다고 법적 책임을 인정하였다. 고노 담화에서 인정한 국가의 관여를 넘어서,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일본제국이 달성하려던 목적은 일본군인들의 신체적·정서적 안정, 군대의 효율적인 통솔과 통제 등으로 보이며, 군대의 보유와 지휘는 국가의 행위 중 가장 권력적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점,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행위에는 군대 외에도 여러 국가기관들이 관여하였는바, 위와 같은 국가기관들이 사경제주체로서의 이익달성 등을 목적으로 상대방과 동등한 지위에서 이 사건 행위들을 자행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 이 사건 행위의 배경에는 당시 일본제국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기한 법령의 정비, 예산의 배정 등이 있었다는 점을 사실 인정하여 일본국의 책임을 명확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외교합의에 의해서도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에 의의가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한국 정부가 국가간의 약속을 어겨 완전 최종적으로 해결된 문제를 다시 문제 삼아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보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전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 주고 있다. 즉 2015년 합의 당시에 이미 본건은 소송 계속중이었다.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2015년 합의가 이루어졌는 바, 이는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2015년 합의의 사정범위에 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만약 그 범위에 포함이 되었더라면 일본 정부는 당연히 2013년부터 시작된 본건 재판의 소송중단 혹은 취하를 한국 정부와 협상하였을 것이며 이를 하지 않았다면 일본 외무성은 중대한 직무 유기를 한 것이 된다. 실제 2015년 합의는 피해자들이 배상청구권의 주체이자 권리자 임을 전제로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외교당국간 외교적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야합이다. 이러한 야합이 2021.1.8. 서울중앙지법이 판결에 의해 그 부당성이 드러난 것이지 이번 판결이 2015년 합의에 반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일본에서 정확한 사실보도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제 이번 판결이 난 이상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제2차 판결이 나기 전에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죄를 향한 협의를 시작하여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

만약 일본 정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협약 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현재 한일간의 마찰은 양국 정부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양국 행정부, 양국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고 있는 양국 행정부 불성실함에 기인하는 것이며 법적으로 보면 법치주의 미성숙에 기인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시취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서 한일간 불필요한 마찰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2021.1.22.은 핵무기금지조약의 발효일이다. 한일 원폭피해자들의 영원인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협의를 성실히 하여 북동아시아 비핵화를 이루는데 한국과 일본이 앞장서기를 기원하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중인 원폭피해자들이 미국 정부와 미국 군산복합체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도 정의가 회복되길 기원한다.

# [3부]

## 국제사회와 언론의 대응을 통해 본 판결의 의미와 과제

손성숙

(샌프란시스코 사회정의교육재단 대표)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 변호사)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



## 2021. 1. 8. 서울지방법원 판결과 의미

손성숙(샌프란시스코 사회정의교육재단 대표)

### I. 판결의 의미

2021년 1월 8일 서울지방법원의 역사적 판결은 주권면제가 반인도적 범죄에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선언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일본군이 수십만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성노예를 강요하며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가 근대 인류사에서 가장 참혹한 범죄 중 하나임을 재확인해주었다. 더 나아가 이 기념비적인 판결은 반인도적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으며, 누구에게나 평등한 사법접근권 (access to justice)이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 발표는 1) 이번 판결의 주요 의미, 2) 판결에 반대하는 주장, 3)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역사와 유산을 기억하는 중요성을 논하고자 한다. 이 발표 마무리에는 미국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개인 활동가들과 단체들의 판결에 대한 시각이 열거되어 있다.

필자가 본 이번 판결의 주요 의미는 세 가지이다. 첫째, 이번 판결은 반인도적 범죄에는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sup>1)</sup> 이고, “당시 일본제국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 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함으로써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 할지라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sup>2)</sup>

1) McCurry, Justin. “Seoul court orders Japan to pay damages over wartime sexual slavery,” *The Guardian*, Jan.8, 2021.

2) Ibid.

이 판결의 첫 번째 의미는 다른 전쟁 범죄에 대한 다른 판결에서도 확인되었다. 예시로 <독일 대 이탈리아: 그리스 개입> 판결이 있다. 1944년 6월 10일, 그리스 디스토마에서 여성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수백 명의 민간인들이 나치에 의해 학살되었다. 디스토마 학살 피해자인 원고들은 독일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수십 년간 법정 공방을 벌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최후의 수단으로, 그들은 이탈리아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2014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디스토마 학살과 같은 전쟁 범죄에 주권면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탈리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판결했다. 이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2014년 판결은 이탈리아가 독일의 주권면제 특권을 침해했다는 2012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명백히 기각했다.

1월 8일 판결의 두 번째 의미는 일본군성노예제가 반인도적 범죄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판결은 국제사회의 선례를 따랐다. 1998년 6월, 게이 맥두걸 유엔 특별보고관은 무력분쟁 중 체계적인 강간, 성노예제, 성노예적 관행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위안부' 제도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했다.<sup>3)</sup> 이어 한 달 후,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로마규정은 성노예제를 반인도적 범죄에 추가했다.<sup>4)</sup> 일본 제국은 납치, 기만적 모집, 가족에 대한 압력, 인신매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군성노예제를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여러 국제법을 위반하였는데 그 중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다.<sup>5)</sup> 1) 헤이그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1907); 2)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금지 조약 (1921); 3) 노예협약 (1926); 4)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1930).

서울중앙지법 판결의 세 번째 의미는 2014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반인도적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번 법원 판결은 원고들의 평등한 사법 접근권 (access to justice)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12년 제67차 유엔 총회에서 발표된 '국가 및 국제 수준의 법치주의에 관한 총회 고위급 회의' 선언(Declaration of the High-level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on the Rule of Law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은 "취약계층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사법접근권 (access to justice)"과 "법률적 지원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의 사법접근권 (access to justice)을 촉진할 수 있는 공

3) McDougall, Gay J. "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 Final Report," U.N.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E/CN.4/Sub.2/1998/13, Jun. 22, 1998, p. 41.

4)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5) Yoshiaki, Yoshimi. *Comfort Women*,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0, pp. 155-160.

정,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차별적이지 않고 책임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한다.<sup>6)</sup> 여성의 권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 이 선언은 "여성 차별과 폭력의 모든 형태를 예방·해결하고 여성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와 완전한 사법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입법적 체계를 구축함에 재헌신한다"고 명시한다.<sup>7)</sup>

'위안부' 피해생존자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중 한 명인 이옥선 할머니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일본서 우리 할머니들 다 죽기를 기다리는데... 죽기 전에 빨리 (일본이 사죄) 해야 돼." 필자는 이옥선 할머니와 다른 살아남은 피해자들이 반인도적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걸 알고 위안을 얻기를 바란다. 정의를 위한 운동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 II. 오해와 오보

1월 8일 판결은 회복적 정의를 위한 세계적 운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다. 다만 이번 판결의 주요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바로잡아야 할 오해와 오보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번 판결이 12명의 일본군'위안부' 원고들이 돈을 요구하는 소송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배상을 촉구하는 피해자들은 일본국이 자행한 전쟁범죄에 대한 공식적이고 상징적인 인정을 촉구하며, 이에 비해 배상금액은 큰 의미가 없다. 모든 승리는 작은 걸음으로 시작하기에 금액과는 큰 상관없이 1월 8일 배상 판결의 의미는 크다.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따르면, 보상은 손실, 부상 또는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서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으로 금전적인 조치를 뜻한다. 반면, 배상은 전쟁 범죄에 대한 보상 즉, 가해자가 범죄를 인정함으로써 지불한 보상이다. 원고인 '위안부' 피해자들도 이런 주요한 인정을 요구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들은 일본 정부 관료들의 일회성 사과와는 달리 일본 국회가 비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6) The United Nations. 2012, *Declaration of the High-level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on the Rule of Law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7) Ibid.

이에 대해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 한국 개인에게 배상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1999년 국제노동기구 (ILO)는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배상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국제법은 국가간 협상의 결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견해로 강하게 기울고 있다.<sup>8)</sup> 야마모토 세이타 전후배상 전문 변호사는 2018년 “개인 청구권은 존재하지만, 1965년 한일협정으로 법원에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일본 대법원의 판결과 일본 정부의 주장은 국제규범에 어긋난다고 발언한 바 있다.<sup>9)</sup>

일본은 거듭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며, 합의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규탄하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진 2015 합의는 2019년 사실상 무효가 됐다.

### III.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역사와 유산을 기억하는 중요성

이번 소송은 지난 2013년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시작하여 그 과정 중 7명이 세상을 떠났다. 그럼에도, 이 판결은 생존하거나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에게 수십 년 동안 미루어졌던 위로를 전한다: 피해자들이 견뎌낸 끝없는 트라우마와 성폭력을 마침내 인정받은 것이다. 피해자들의 끈기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념비적인 판결은 국제사회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그 어떤 관용도 베풀지 않을 것임을 상기시킨다. 국가는 주권면제 뒤에 숨어서 전쟁 범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성공적인 투쟁은 아직 정의를 되찾지 못한 다른 반인도적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선례가 되었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역사와 유산을 통해 우리는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반인도적 범죄인 군성노예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는다. 이 참혹한 사건은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귀중한 교육 자료가 되며, 국가 주도 여부를 막론하고 모든 형태의 성폭력에 대한 경고가 된다.

8) “[Fact check] S. Korean individuals have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rom Japan,” *The Hankyoreh*, Aug. 7, 2019.

9) “Japanese foreign minister acknowledges rights of individual victims of forced labor to make claims,” *The Hankyoreh*, Nov. 17, 2018.

‘위안부’ 제도의 비인간성은 오늘까지 이어지는 제국주의, 차별, 역사부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들과 연결된다. 이번 판결은 주권면제와 국가 간 협정보다 인권이 우선함을 선언한다. 특히 인권유린의 피해자가 토론 테이블에 초대되지 않았을 때는 더욱 더 그렇다고 할 수 있다.

#### IV. 한국 법원의 2021년 1월 8일 판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은 정의를 위한 용기 있는 싸움을 이끌었다. 정의를 추구하고 평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평화, 정의, 여성인권실현을 위해 피해자들이 시작하고 주도한 정의회복을 위한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이후 아시아, 유럽, 미국의 다른 나라들로 퍼져 나갔다. 아래는 미국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서 받은 판결에 대한 발언이다.

##### **Ramsay Liem**

심리학 명예교수

인권과 국제정의센터 **Center for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Justice**

보스턴 칼리지

나는 한국법원의 최근 판결을 여성들(안타깝게도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많지만)의 권리와 주장을 국가가 마침내 인정하고, 미국이 지난 70년 간 한미일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의 만행을 지우는 등을 통해 이어 온 한국에 대한 개입에 대항한 것으로 간주한다. 1965년 한일협정은 일본의 비타협적인 행태의 역사적 토대이자, 주로 일본과 미국의 이익을 위한 협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무엇보다도 여성들과 지지자들에 의한 수년간의 용기 있는 투쟁을 역사적으로 인정하고, 한국 주권을 환영한 표현이다.

##### **Uldis Krūze**

역사학 교수

샌프란시스코 대학교

군성노예제 문제는 보편적인 호소력을 가진다. 한국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용기와 역사적 현실에 대한 확언을 보여주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한국과 일본, 바이트 새 정부 간 현 외교와 권력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집중 분석한다. 어

편 이들은 한국인이 일본의 제안에 대해 결코 만족하지 않고 항상 더 원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런 시각들은 논점을 벗어난다. 문제는 정의, 역사적 진실과 한민족의 고통에 대한 존중이다.

1990년 9월, 일본의 정치인 고 가네마루 신과 사민당 지도자 고 다나베 마코토는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와 1945년 이후 분단된 한반도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에 대한 책임을 폭넓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단언했다. 그들은 사과와 배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일본 정치 지도자들은 말해야 하는 것을 말할 의지와 용기가 있었다. 스가 총리는 이들을 본받아야 한다.

**Rose Camastro-Pritchett, MFA**

예술가, 작가, 교육자

Rosecamastropritchett.com

나는 2013년부터 '위안부'에 대해 연구하고, 국제적으로 전시되는 예술작품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어떻게 일본 정부가 20만 명이 넘는 여성들을 조직적이고 폭력적으로 동원하여 2차세계대전 동안 일본군성노예로 이용했는지 설명하고, 학대당한 여성들의 고통을 알리고자 한다.

범죄에는 책임이 따른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자행한 범죄를 인정하고 배상해야 한다. 일본군성노예제는 전쟁범죄였고 따라서 공소시효도 없다. 인정과 사죄, 배상의 부족은 범죄의 참혹함을 경시하며, 다른 국가가 여성에 대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도록 한다. 지금 멈춰야 한다.

**Christine Hong**

문학 부교수

비판적 인종 및 민족 연구학장 Director, Critical Race and Ethnic Studies

인종 정의 센터 공동 소장 Co-director, Center for Racial Justice

학술지 Critical Ethnic Studies의 공동 편집자 Co-editor of the journal, Critical Ethnic Studies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크루즈

일본의 태평양 전쟁 체제인 군성노예 생존자들에 대한 정의실현은 일본의 탈제국화 과정만큼이나 한국의 탈식민화 과정에서도 필수적이다. 30년 전 김학순 할머니의 첫 공개 증언으로 기념비적인 일본정부에 대한 집단 소송이 시작되었다. 김학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다른 생존자들에게 목소리를 내도록 용기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에게 일본군성노예제 범죄의 책임을 묻는 무수한 소송이 제기되도록 했다. 그러나 그 후 수십 년 동안, 악명높게도 느린 일본 법 체계에서 집단 소송은 번번히 중단되거나 실패하였다. 그 동안 생존자들과 이들을 끊임없이 지지한 활동가들은 포기하지 않고 늦어진 정의실현을 위한 운동을 조직하고, 도쿄에서 열린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과 같은 혁신적인 법적 활동을 전개하거나, 미국 외국인 불법행위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추구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탐구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의 법 체계에서 생존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실현은 지난했다. 그리고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아베 신조 정부와 악마의 거래를 하면서 결국 생존자들을 배신했다. 한국법원은 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2017년 서울지방법원 판결은 냉전시기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감금이 중대한 인권침해였다고 판결하였고, 2021년 같은 법원에서 태평양전쟁시기 '위안부' 제도는 반인도적 범죄이고, 일본에게 피해자들과 피해자가 사 망한 경우 유족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이 판결들을 통해 제국주의와 폭력적인 성적지배, 착취로 피해입은 한국 여성의 인권을 국가가 흥정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나타냈다. 생존자들이 지칠 줄 모르고 분명히 말했듯이, 정의의 시기는 지금이다.

### '위안부' 배상을 위한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한 성명서

#### US Women's Caucus at the UN

2021년 1월 17일

우리는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인정과 배상을 선언한 2021년 1월 8일 판결을 환영한다. 이 역사적인 결정은 일본에게 주로 한국인이었던 약 20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아시아 전역에서 성노예를 강요한 전시 성노예제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이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성고문은 일본 군 당국에 의해 계획되고 실행되어 수년간 지속되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은 특히 전시 중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과 소녀들의 취약성을 반영한다.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20호는 무력분쟁 하 강간을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전쟁 말기 사면조항으로부터 성폭력 범죄를 제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보리는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해 국가들에게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불처벌을 종식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법원 판결은 안보리의 결의를 준수하고 이를 진전시킨다. 우리는 성노예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용기 있는 여성들과 피해자들의 정의실현을 위해 연대한 페미니스트 동지들에게 존경하고 감사를 표한다. 미국의 좋은 친구인 일본이 과거의 유감스러운 잘못을 바로잡고, 유엔 결의안의 가치를 준수하며, 법원의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

자세한 내용: Susan H. Lee 목사 (uswomenscaucus@gmail.com)

[번역: 정의기억연대 김해슬]

##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승소판결의 국제적 의미

백태웅<sup>1)</sup>(하와이대 교수, 변호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2021년 1월 8일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판결<sup>2)</sup>은 우리 헌법과 법질서에 따른 한국 법원의 적극적 인권 옹호 의지에 근거하여 국내법의 원리와 국제법 및 국제관습법의 현재 발전 상태를 두루 고려한 적법한 판결이며, 국제 관습법 상의 주권면제의 제한성의 구체적 사례를 특정하는 또 하나의 성과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한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전적으로 유효하고,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한 근거를 충분히 갖춘 판결이다. 이는 반인도범죄 및 전쟁범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해 온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여러 새로운 판례와 같은 맥락에서 있고, 또 2차대전 후 시작된 뉴렘브르크 전범재판소, 유고 및 르완다 전범재판소,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어 온 국제재판소들과 최근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제소를 승인한 국제형사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발전시켜 온 국제인권법의 원칙에 발맞춘 역사적 사건이며, 한국 법원이 견지할 자랑스러운 선례가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의 세부적인 논리를 보강하고 이 판결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파급효과를 고려하면서 법적 논리를 정교화하는 것은 남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안은 한국법원이 국내적 차원은 물론이고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과 관련한 판결의 새지평을 여는 일이며, 이를 일본과의 관계 문제라는 협애한 시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일본군 위안부 사건과 강제징용 등 일제 하에서 진행된 전쟁범죄 또는 반인도범죄 행위와 관련한 일본의 대응은 일본이 국제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위상에 비해 매우 부끄러운 대응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가 모두 인식하고 있는 구 일본이 태평양전쟁 기간에 자행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주권면제라는 해묵은 논리를 내세워 책임을 외면하는 것은 현대 국제사회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한참 못 미친다. 그 정도로 심각한 국제적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주권면제를 이유로 한 책임성조각을 주장하기 보다는, 해당 사안에 대한 불법행

1) 하와이대학교 로스쿨 교수, 한국학연구소 소장, 유엔인권이사회 강제실종실무그룹 의장

2) 2016 가합 505092 손해배상(기)

위에 대한 소송에 동의 (consent)하고 주권면제를 포기 (Waive)하여 소송을 통한 법적 구제를 인정하고 능동적으로 전환기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국제법과 주권면제법의 대세이다.

일본은 아직도 주권면제라는 구시대적 방패를 내세워 일체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하지 않고 법정에서 주권면제 포기에 대한 동의를 한 사례도 없다. 매우 부끄러운 일이며 이는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취할 능동적 역할의 가능성에 비해 볼 때 매우 근시안적 접근이다.

미국의 경우 국가에 대한 소송불가의 원칙은 헌법에 명기되어 있을 정도로 주권면제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소송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어 왔다. 특히 1952년 테이트 편지 (Tate Letter)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주권 면제의 제한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해 왔으며, 1976년 외국주권면제법을 제정하여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연방불법행위청구법과 외국인불법행위청구법 (Alien Torts Claims Act)에 따른 인권소송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할머니 들은 2000년 9월 18 일 워 싱 턴 디시 (Washington D.C.) 연방 지법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제법에 입각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sup>3)</sup> 그 소송은 연방지법에서 1 년여의 심리 과정을 거쳐 2001 년 10월 4 일에 기각되었고, 그에 이은 항소심 또한 2003 년 6월 27일 위의 사건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위안부할머니들은 2003 년 11 월 20 일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 (petition for writ of certiorari)을 낸 후, 일본 정부 측의 반론, 원고 측의 답변서 제출 등의 과정을 거쳐, 미국 대법원은 지난2004년 6월 14 일 주권면제 제한성의 소급효를 불인정한 원심판결의 문제를 인정 위안부 할머니 측의 상고신청을 받아들여 항소법원의 판결 내용 일부를 파기 하고, 사건을 다시 연방 항소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 사건은 2005년 6월 28일 미국 연방항소법원 (Court of Appeal)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기각되었다. 기각 판결의 근거는 재판 불가능한 정치적 사안 원칙 (non-justiciable political question doctrine)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국가 주권면제는 52년 이전으로 소급된다는 것은 확고한 원칙이 되었고,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한 Altman 사건의 그림 소유자는 최종 조정으로 승소했다. 영화 Woman in Gold가 그 내용을 잘 다루고 있다.

미국의 위안부 관련 재판에서 원고 변호사 측은 국제관습법 상의 주권면제와 관련해서 위안부 사건의 경우 상행위(commercial acts)와 주권면제적용 철회 (waiver) 두가지 근거를 사용했는데 상행위는 매우 설득력 있는 논리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못했지만, 전쟁범죄와 반인도 범죄 등 강행규범 위반의 경우 주권면제적용의 묵시적 철회 또는 사실상 불인정의 근거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은 갈수록 확대되는

3) 이 사건 진행과 관련해서는 필자의 다음 논문 참조: 백태웅, 미국에서의 인권소송- 일본군 위안부 소송을 중심으로, 43 고려법학 389 (2004).

추세이다.

주권면제의 원칙은 웨스트팔리아조약 체제 이후 주권평등원칙에 따라 발전하여 국제관습법의 지위에 있어 왔지만, 그 주권면제의 원칙 점차 변화하여 점차 금전적 목적에 근거한 행위와 철회(waiver)의 경우는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국제관습법으로 수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직접 수행한 공식적 전쟁행위의 경우 주권면제의 예외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대체적 경향이다. 다만 직접적 전쟁 수행행위가 아니라 정부기관에 의해 조직적으로 진행된 고문이나 강간 등 해당 정부가 정당화하기 어려운 전쟁범죄나 반인도범죄에 대한 주권면제의 주장은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 언제 주권면제를 자발적으로 철회했다고 볼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철회의 의사가 얼마나 명백하게 해당 국가의 명시적 의사표시로 나타났는지, 또는 주권면제의 불인정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는지는 소송과정에서 여러 증거에 근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당사국이 반인도범죄나 전쟁범죄 등과 관련 해당 국가가 행한 불법행위가 상행위도 아니고 추후 명시적으로 주권면제의 철회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할 때에는 상당히 어려운 법 논리의 구성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국제형사재판소를 포함한 여러 국제재판에서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늘고 있고, 전직 및 현직 국가원수를 재판하여 유죄선고를 하면서 주권면제의 예외를 해석하는 폭은 넓어져 왔다.

국제법(관습법 포함)의 국내적 적용에서 국내법과 국제법이 상충할 때 국내법원이 어느 법이 우선하는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한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국내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가능한 한 국제법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원칙 (Charming Betsey원칙)이 있다. 하지만 국내법 질서에서는 헌법이 최상위 규범이고, 국내법 절차에 따라 명시적으로 국제법과 상치되는 별도의 입법을 할 경우, 국제적 다툼과는 별도로 그것을 국내법 상 적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 원칙이다. 헌법이 최상위 규범이고 국제법도 헌법 아래에서 국내법의 규범 중 하나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주권면제원리의 민사법 상의 적용과 형사법상의 적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형사처벌의 경우는 공공정책 (public policy)차원의 국가 재량을 좀 더 넓게 인정하는 편이며, 불법행위에 따른 소송의 경우 과거에 비해 더욱 폭넓게 개인의 국가에 대한 소송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의 남캘리포니아대학 어윈 세메린스키 (Erwin Chemerinsky)교수는 주권면제원칙은 더 이상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까지 주장하고 있다.<sup>4)</sup>

한국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법적 구제를 허용한 역사적 판결이 오랜 역사적 과제로 남아 있는 이 문제의 실제적 해결로 나아가는 중대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4) Erwin Chemerinsky, Against Sovereign Immunity, 53 Stanford Law Review 1201 (2001).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외면해온 언론 정의회복을 위한 판결조치 왜곡할 것인가 언론보도에 비친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 승소

### 신미희(민언련 사무처장)

#### 1. “인권이 주권 위에 있다” : ‘위안부’ 증언 30년 첫 판결

- 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본국은 원고들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함.
- 한국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서 국제적인 반인도 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시함.
- 반인권적 범죄행위인 '위안부' 피해를 '다른 나라의 주권행위는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상 국가면제론이 아닌 헌법적 권리와 인권 문제로 보고, 사법적 책임을 물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보편적 정의와 인권의 원칙을 재확인한 역사적 판결임.
- 2016년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지 5년, 법원에 조정신청을 낸 시점으로 7년이 걸렸으며 1991년故 김학순 선생이 국내 거주자 최초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증언한 지 30년 만에 나온 '일본국 배상' 첫 판결임.

#### 2. 주요 신문의 판결 보도

- 판결 의미에 대한 상반된 논조
  - 판결의 역사성 강조(경향신문, 한겨레) : '정의' 선언, 피해자권리 구제, 전시성폭력문제 해결, 개인 시민권 회복 등
  - 판결의 파장 및 한일관계, 국제관계에 미치는 우려 부각(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 한일관계 냉각 및 악화, 일본 보복조치 불가피, 사법부가 흔든 외교 등
- 판결 이후 과제 및 해법에 대한 방식도 제각각
  -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 우선, 배상책임 이행 : 경향신문, 한겨레
  - 한일 정부의 정치적 노력과 외교적 해법 주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 판결 취지와 의미 왜곡

- 문재인 정부 무능 강력 성토 및 '외교실패'로 비판 : 조선일보, 동아일보
- 일본군 '위안부'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결과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비교하며 여성단체가 '위안부'와 '여성'을 운동에 이용하고 있다고 폄훼 및 비난 : 조선일보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터뷰 아전인수식 왜곡 및 악용 : 조선일보 이용수 선생 특집 인터뷰

① 2021년 1월 9일자 : 판결 다음날이 주말임에도 주요 소식으로 비중 있게 보도

신문	제목(면)	키워드
조선 일보	“日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 배상하라”(1면) 한일관계 개선 시도하던 文정부 앞에...위안부 판결 돌발 변수(3면) 사진/남관표 주일대사 초치(3면) 이용수 할머니 “이보다 큰 새해 복 있을까”(3면) 한 국가 법원이 다른 국가에 배상판결, ICJ 판례와는 안 맞아(3면)	한일관계 대형약재 정부 당혹, 관계개선 원점 ICJ 판례와 맞지 않음 양국 타협보다 강공선택 우려 일본 보복조치 불가피
중앙 일보	위안부 피해자들, 30년 만에 일 정부에 승소(1면) “일본 정부에 최후통첩 판결” 공공 얼어붙는 한일관계(3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 ‘돈으로 해결 안돼, 일본이 사죄해야’(3면)	일본정부 최후통첩 판결 한일관계 냉각 및 파장 일본 강력반발과 보복조치 우려
동아 일보	법원 “日정부, 위안부 피해 배상하라”(1면) 법원 “위안부 운영, 반인도적 범죄...日정부를 재판할 권리 있다”(3면) “판결 기쁘지만...돈보다 日정부의 진정함 사과 받아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반응(3면) 재판부가 판결 근거로 언급한 ‘페리니 사건은...’ (3면) 日 “항소 안할 것” 판결 불인정·韓 “역사와 한일관계 분리해야”(4면) 사진/日외무성, 남관표 대사 초치(4면) “자료 더 달라” 할머니측에 요청한 재판장(4면) 日 장용 기업들, 2년 넘게 배상 불복 시간 끌어(4면) <b>사설</b> “日 위안부 배상책임” 판결...한일 양국 외교로 해법 찾아라(27면)	일본정부 배상책임 판결 실질 배상 혐로 진정한 사과 우선 일본 강력반발 배상 불복 ICJ 제소 정부 외교실패 한일관계 악화, 약재 추가 외교해법 모색
경향 신문	“일본은 ‘위안부’에 배상하라” 첫 판결(1면) “반인도적 범죄행위 ‘피고’ 일본, 국가면제 뒤에 숨을 수 없다”(3면) 주일·주한대사 상호교체 발표한 날 더 공공 언 한일관계 (3면)	국제관습보다 보편인권 우선 인권이 주권보다 앞선다 반인도적 범죄 국가면제 불가 전시성폭력 피해 해결

신문	제목(면)	키워드
	일본 정부 “국제법 위반한 판결…항소할 필요도 없어” 반발(3면) 피해자측, 일본 정부 재산 직접 찾아 매각 청구해야(3면) <b>사설/“인권이 주권 위에 있다”는 ‘위안부’ 승소 판결의 울림(23면)</b>	정의회복 디딤돌 일본 반발 및 양국 공방 격화
한겨레	위안부 증언 30년만에“…“일 배상하라” 한국법원 첫 판결(1면) 국가면제론 깬 재판부 ‘일제 반인도범죄, 한국에 재판권’(5면) 사진/일본, 남관표 대사 불러 항의(5면) 정의연 “기념비적 판결…일 정부 사죄즉각배상 나서야”(5면) 강제동원 이어 한일관계 험로…여건상 집행은 쉽지 않아(5면) <b>사설/일본 정부에 ‘위안부’ 배상책임 물은 역사적 판결(19면)</b>	보편적 정의와 인권준중 피해자 권리구제 정의회복 기념비적 판결, 역사적 판결 일본정부 법적 배상책임
한국일보	법원 “위안부 피해배상” 日정부 책임 처음 물었다(1면) 강제징용 판결보다 더 큰 파급력…한일관계 또 ‘동파위기’(3면) “1억? 수십배 줘도 부족해…사죄가 먼저”(3면) 日 자산찾기매각 쉽지 않아… 실제 배상 ‘힘난’(3면) <b>사설/위안부 첫 배상판결…日 진정성 있는 사과 외면 말라(23면)</b>	일본정부 배상책임, 사회우선 실제배상 험난 한일관계 위기 및 악재 일본 경제보복 사법부가 흔드는 외교
매일경제	위안부 피해 첫 승소…韓법원 ‘日정부 배상하라’(1면) “위안부는 한반도서 발생한 인권범죄, 韓에 재판권 있다”(2면) 승소까지 7년 5개월…그사이 할머니 12명 중 7명 별세(2면) 日, 남관표 대사 불러 “배상판결 강한 유감”(3면) “살아있으니 기쁜 날 와/日, 진심어린 사죄해야”/울먹인 이용수 할머니 강제징용 이어 위안부 판결까지…‘출구’없이 파국 치닫는 한일	한일관계 악화로, 최악고비 출구없는 파국, 화해모드 찬물 일본정부 유감 및 반발 배상금 집행 ‘산넘어 산’ 한중일 정상회담 곤란 한미관계 손상 우려
한국경제	법원 “日 정부, 위안부 할머니에 1억씩 배상하라”… 日 강력 반발(8면) 한일 관계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나(8면)	일본 강력반발, 외교마찰 실제배상 미지수

② 2021년 1월 10~18일자 : 한일관계 악화 및 일본 경제보복 우려 부각

신문	날짜	제목	키워드
조선 일보	1.11(월)	<b>사설/위안부 이용' 운동과 '여성 이용' 운동, 참으로 역겹다(35면)</b>	여연 대자보 빌미로 여성단체 왜곡 및 폄하
	1.12(화)	'日 위안부 배상' 2차소송 선고 연기(12면) 시론/한일 관계 악화, 위기의식조차 없는 정부(33면)	한일관계 악화 국가면제 비적용 판결 비난
	1.13(수)	선우정칼럼/법원의 反日 모험, 다음에 올 것들(34면)	ICJ제소 활용 주문 일본내 반한감정 및 재일동포 사회 불안감 과장
	1.15(금)	여건이 민단 단장 인터뷰/"민단 건물에 돌 날아와...교포 사할 걸렸다"(8면) 文대통령, 떠나는 일본대사 만나 "미래지향적 관계 조기 복원해야"(8면)	일본정부와 대화외교 주문
	1.16(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정의연·윤미향 폭로' 그후 "손주들 재롱 부럽냐고? 나의 싸움 자랑스럽다. 정의연 비리 폭로한 것 후회 안한다..."그것 참 잘 밝혔다 싶어 "(B01~02면)	이용수선생 특집인 터뷰로 정의연·윤미향 비난
중앙 일보	1.11(월)	일본, 위안부 판결 ICJ 제소 검토...한국 불응 땀 소송 불가능(14면)	일본 경제보복 등 우려
	1.13(수)	일본 측량선 한국 EEZ 진입, 위안부 판결 이어 갈등 쌓인다(10면)	외교 리스트 강조 일본측량선 EEZ 대치 위안부 판결 영향
	1.16(토)	'국가면제 인정추세, 한국 패소 가능성 있어 외교로 풀어야(14면)	한일관계 악화 국가면제 인정추세 주장
	1.18(월)	리셋코리아/한일 지도자 '통 큰 거래 시도해보길(29면)	
동아 신문	1.11(월)	"정부, 위안부 피해배상 손놓아...재판이 마지막 구제수단"(6면) 아시히신문 "日정부, 위안부 배상판결 ICJ 제소 검토"(6면) 문경인 "文대통령의 日인식 나쁘지 않다"(6면)	일본 ICJ제소 대응 검토
	1.13(수)	점점 꼬이는 한일관계, 이번엔 해상 선박대치(8면)	일본측량선 EEZ 대치 한일 갈등 격화, 약재
	1.16(토)	日자민당 "신임 주한대사 부임 보류해야" 한국법원 위안부 배상 판결에 반발(5면)	일본정부 반발 갈등책임은 한국 3국중재 해법 주장
	1.18(월)	스가 日총리, 이임 남관표 대사 면담 거부...외교 결례 논란(5면)	
경향 신문	1.11(월)	13일도 위안부 소송 선고...'반인도적 범죄, 국가면제 제외' 이어질까(4면) "한국 법원 위안부 배상판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4면)	국가면제 제외 영향 주목 ICJ 제소 실효성 분석 인권이 주권보다 중요 사법 분령 '정의 선언
	1.12(화)	위안부 손배소 재판부, 선고 이틀 남기고 돌연 연기(9면)	

신문	날짜	제목	키워드
	1.18(월)	정인진의 청안백안/위안부 손배해상 판결을 보는 시각(25명)	외교통한 판결 실효성 모색
한겨레	1.11(월)	일 '위안부 판결' 국제제소 검토...한일관계 냉기류 악화(6면)	국가면제권 인정 추세
	1.12(화)	위안부 피해자 2차소송 선고 이틀 전 돌연 연기(9면)	개인권리 보호 흐름 한일관계 냉기류 악화
	1.13(수)	인터뷰/이상희 민변 '위안부TF' 변호사 "위안부 판결, 한일관계 영향보다 '개인 시민권 회복' 주목해야"(10면)	일본정부 배상판결 반발
	1.14(목)	일 자민당 "남관표 돌려보내라 할 것" 신임대사 '아그레망 취소' 주장까지(6면)	일본 국제피소 검토 2차소송 선고 연기
	1.15(금)	문대통령 "한일, 때때로 문제 생겨도 미래지향적 발전관계 발목 잡혀선 안돼"(6면)	한일관계 영향보다 '개인 시민권 회복' 주목
	1.18(월)	"문대통령, 스가 총리와 진솔한 대화 원해" 스가 총리, 남관표 대사와 이임면담도 안해"(4면)	일본정부 배상이행 강구
	한국일보	1.13(수)	日, 위안부 판결에 자극 받았나...한일 이틀째 EEZ 대치(14면)
1.14(목)		위안부 합의 사용설명서(26면)	일본측량선 EEZ 대치 영향
1.18(월)		떠나는 한국대사 면담 외면하 스가...외교결례 논란(6면) 아침을 열며/위안부 판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27면)	폭발직전 한일관계 자극 한국정부 이중태도
매일경제	1.11(금)	법원 위안부 배상판결, 한일정부 책임 떠넘기기만 할 건가(3면)	한일관계 냉각악재 답답
	1.12(화)	"위안부판결 집행 땀 외교문제...韓정부 해결의지 보여야"(10면)	일본정부 배상책임 파장 한일정부 책임 떠넘기기
	1.13(수)	EEZ 침범하고도...日, 되레 한국 정부에 강력 항의(2면)	판결 집행시 외교문제화
	1.16(토)	위안부 판결에 발끈한 일자민당 "韓 자산동결·금융제재 검토"	일본정부 강경대응 전망
	1.18(월)	"文, 스가 만나 진솔한 대화 원해" 강창일 주일대사 22일 부임 "日기업 자산압류 안되도록 정치적 해결 최선 다하겠다"	한국정부 해결의지 촉구 외교적, 정치적 해법
한국경제	1.11~18	후속 없음	무관심

## 손주들 재롱 부럽냐고? 나의 싸움 자랑스럽다



남정미 기자의 **정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정의연·윤미향 폭로' 그후

10년 전 겨울, 수습기자 시절 매주 수요일이면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 갔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이른바 수요집회 취재를 위해서였다. 그 무렵 수요집회는 1000회를 돌파해 국내외 관심이 뜨거웠다. 취재 요령이 부족한 수습인이라,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칠까 봐 윤미향 당시 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대표 발언을 비롯해 시민들이 이야기까지 수첩에 빼곡히 받아 적었다. 한 달이 안 돼 노트 한 권을 다 채웠지만, 정과 그 안에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 들은 이야기가 기록만 있었다. 윤미향 당시 대표에게 반박이 가로막히더라. 그는 "조선일보에는 인터뷰 안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가 왜 이 문제에 관심 가지느냐"고 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도 좌우(左右) 진영 논리가 작동한다는 걸 그때 알았다. 과연 할머니들과 같은 생각인지 궁금했었다. 그조차 물어볼 수 없었다.

작년 5월 이용수(83) 할머니의 기자회견은 그 궁금증에 대한 10년 만의 대답이 됐다. 이 할머니는 정의연과 윤 대표의 가부금 회계 부정 등을 지적하면서 "증오 키우는 수요집회에 더는 참석하지 않겠다. 자기들과 함께하는 할머니는 피해자라며 정기간, 관계없이 으르렁 울며 할머니라도 신경 안 쓰는 걸 봤다. 30년간 속을 만들 수있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이용수 할머니에게는 "넌세가 난다"는 배우살부터 "천일귀"라는 혐오 발언까지 쏟아졌다. 할머니 주변에선 지인, 관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쏟아냈다. 할머니 얘기를 직접 들으러 지난 11일 대구로 갔다. 할머니가 일기를 생필품 하나도 안 갖 2할쯤 호텔 로비에서 만난

돈을 원한 적 없다  
단, 세계 만방에 사죄하길  
손배소송 당장 취하할 것

윤미향 한번하고, 죄 물라  
자기 할 거 다 하고 있어  
정의연과 화해? 아니다

김여준 '배후설' 무혐의?  
내 기억대로 말한 것  
모함은 처벌받아야



작년 10월 이용수 할머니는 대구 동서구 두 동행 이월드에서 장수 사진을 촬영했다. 이 할머니는 '수요집회 세월이 더는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뉴스1



지난 11일 대구에서 만난 이용수 할머니는 미세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앉은 화장을 했다. "고무신, 사진이 스나서 좀 예뻐 보이겠다"고 하니 할머니가 말했다. "사진을 잘 찍어서 그날처럼" 입가에 살짝 미소가 번졌다. 82면에 계속

다. 집회 현장에서처럼 비장하지도, 기자 회견장에서처럼 화난 모습도 아니었다. 로비에 공사 소음이 발생하자 "내 방으로 가자"고 이르고, 인터뷰가 길어져 2시간을 넘어섰는데도 "하러면 제대로 해야 한다. 편찮다"고 했다. 살아온 세월이 60년 남게 지어 나는 기자에게 할머니는 마지막 답변까지 존경을 썼다. 미세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열개 화장한 모습이 구순을 훌쩍 넘는 나이에 또 고였다.

#### 재판 연기돼 걱정... 이젠 믿을 곳이 없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경관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국은 배 할머니 등 12명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대한 일본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할 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에는 이용수 할머니의 손해배상 소송 최종 판결도 내려질 예정이다. 그러나 인터뷰 한 시간 전, 이 재판이 연기됐다는 뉴스가 나왔다.

-13일 재판이 연기됐다고 합니다.  
"내일 서울 가려고 짐을 다 챙겨놓았는데... 또 연기가 됐다니 걱정이지요. 이제는

아무 때요 믿을 곳이 없으니깐요. 절박한 마음으로 밭에다 호소하고 있는 건데, 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 8월 판결 내용을 듣고 많이 우셨다고요.

"저 하늘에 계시는 할머니들한테 가서 할 말이 없었는데 이제 말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쁨, 눈물이지요. 정초부터 선을 같은 소식, 좋은 소식 같아서는 누나 하려고요."

- 코로나에 건강은 어떠신가요?

"나이가 있으니 여러 가지 병이 있잖아요. 혈압이 높고, 심장도 나쁘고 당뇨도 있어서 조심하며 자요. '아이 캔 스피크(이용수 할머니를 모티브로 삼은 영화)'에서 200년 살면서 일본과 싸우겠다고 했는데, 지금 살아선 100년 살기도 어렵겠어요(웃음)."

이날 할머니는 오후 1시로 잡힌 인터뷰 시간을 맞추려고 짐을 미숫가루와 계란 한 알로 간단히 먹었다고 했다. 안경은 썼지만, 보청기는 끼지 않았다. 할머니를 돌보는 시인 단체 관계자가 '속타기라는 얘기까지 다 들으실 정도로 귀가 밝으시냐'고 했다.

-영화 '아이 캔 스피크'를 보셨나요?  
"그럼요. 나쁜놈이 안기를 참 하러러군

요. 나쁜놈이 대사에 실제 제가 한 얘기가 많아요. 그 영화를 찍고 나서 후편도 찍으려고 했는데, 한 편 찍고 안 하네요(웃음).  
- 후편을 찍는다면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까요.

"미국 가서 우리가 어떤 활동 했는지를 담으면 좋겠어요. 1992년부터 미국이고 일본이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일본을 고발한다고 외쳤어요. 비행기 탄 횟수를 따져보니 110번이 넘더군요."

이 할머니는 1992년 정대협에 자신의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알렸다. 16세 때인 1943년 10월 고향 대구에서 "이웃이 불러 줄줄했다가 다른 여성 4명과 함께 일본군에 끌려갔다"고 했다. 기차와 트럭, 배 등을 옮겨 탄 끝에 도착한 곳이 대만이었다. 위안부 피해 사실을 알린 뒤 이 할머니는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증언했다. 2007년 2월에는 미 의회에서 처음 열린 위안부 피해 관련 청문회에서 일본군의 만행을 알렸고, 미 하원은 일본군위안부 시지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영화 '아이 캔 스피크'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82면에 계속